

2013년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3. 6. 1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

2013년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3 -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15:00 ~ 15:29 ○ 장 소 : 구청 지하1층 CCTV 통합안전센터 내 회의실
참석위원	○ 위 원 장 : 행정관리국장 ○ 내부위원 : 민원여권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외부위원 : 이형우, 박민영, 엄정숙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소개 3. 위원장님 인사말씀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5. 폐회선언
상정안건	「2013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 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한 사항에 대한 결정 타당성 여부
심의결과	부분인용

<발언요지>

☐ 위원장

2013년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2013.5.24. 정보공개청구 내용 3가지 중 첫째, 과태료 부과현황은 공개, 정비결과 보고서는 부존재, 2013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비공개 처리함

- 2013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내에는 ‘노점상 실명제’나 ‘노점상 재산조회’ 등의 노점 완전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계획 포함,
- 관련법령 정비 등 시행 이전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가로환경정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계획서 19쪽에는 명동 노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

□ 위원장

본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경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3. 5. 24. 주식회사 ○○○○○에서 첫 번째, 명동 관광특구내 노점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두 번째, 노점 관리사항에 대한 근무일지나 정비결과 보고서, 셋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역을 공개 청구함
- 2013. 5. 29. 가로환경과에서는 첫째, 명동관광특구내 노점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은 비공개 결정, 둘째, 노점 관리사항에 대한 근무일지나 정비결과보고서는 정보부존재 결정, 셋째,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함
- 2013. 5. 31. 주식회사 ○○○○○에서는 명동 관광특구내 노점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공개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신청함
- 오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를 놓고 이를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부분 인용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함

□ ○○○ 위원

추진계획이나 시행일자가 사전 계도 실시가 2013. 2. 1 ~ 28. 노점상 재산조회 실시가 2013. 2월 ~ 4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미 시행을 한 부분입니까?

□ 처리부서

- 실제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음
- 법적으로 동의 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인지 안행부 및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임

□ ○○○ 위원

결론을 말하면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정비 중에 있다든지, 실시했다는 것,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생각함
- 개인의 과태료 부과내역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개략적인 계획은 공개가 가능하며, 시민들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 정비계획 자체가 내부검토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는 ○○○○○○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
- 최근 추세는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구청 입장에서는 정비계획이 공개되었을 경우 노점상 측에서 강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약함
- 정비계획은 정보공개에 충분한 대상이 된다 생각함

□ ○○○○ 위원

-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규제에 관한 부분이 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시행될 수도 있지만 법적 문제가 있어서 폐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 위원

- 5호와 관련되어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한 바 있음.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면 단속 및 지도 업무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단속계획이라던가 직원들 투입계획 같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 위원

- 정보공개법을 만든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지 비공개를 하려는 것이 아님.

□ ○○○○ 위원

부서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비계획은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유는 정비계획은 명동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지역 등 전 권역이 다 들어가 있음.

- 단계별로 절차가 있음. 현재 재산조회는 법령의 뒷받침 없이는 못하게 되어있음. 그래서 그 단계가 제대로 협의가 안되서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게 나갔을 때 첫째, 반발이 예상되고, 둘째, 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위원

부분공개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비계획에 대해서 분명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일단은 구에서 보도자료를 냈음.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만큼은 공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됨. 그래서 선별해서 공개함이 타당함

□ 위원장

- 완전히 공개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 전부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음.
- 부분공개를 전제로 심의자료 8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공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목차 및 10페이지 문제없다고 봄
- 11페이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문제없다고 봄
- 12페이지 구체적 내용 나오지 않는 관계로 문제없다고 봄
- 13페이지 크게 문제없다고 봄
- 14페이지 크게 문제없다고 봄
- 15페이지 단속반의 실명이 거론된 점, 그리고 계도기간 및 시행일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함
- 16페이지 전체 노점상 재산조회 시행되지 않고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함
- 17페이지 검토해야하는 사항으로 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도록 함
- 18페이지 중간 하단에 제3단계 이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 19페이지 정비조가 아주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함

- 그 이하는 문제없다고 봄
- 총론적으로 말해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될 공익간의 충돌을 절충하는 선에서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공개 하는 것은 위에서 적시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음. 결국은 부분인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음.

☐ ○○○, ○○○, ○○○, ○○○, ○○○, ○○○ **위원**

- 찬성함

☐ **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으로 부분인용을 결정하겠습니다. - 땡땡땡 - (의사봉)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